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의 안 번 호	제325호
의 결 년월일	2008. 10. 24. (제147회)

제안년월일 : 2008. 10. 21.

제 안 자 : 의회운영위원장

□ 제안이유

○ 최근 상위 법령의 개정으로 의회 관련 자치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용조항이 개정된 상위 법령과 일치하지 아니하여 이를 바로 잡는 한편,

○ 한글맞춤법과 「부천시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 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의원의 등록과 의석의 배정 및 의원 선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부터 제5조까지)

나. 의회의 개회 및 폐회, 의원의 청가 및 결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다. 의장과 부의장 선거, 임기 및 사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라. 회의의 회기, 개의 및 휴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라. 의사일정의 작성 및 변경, 의사일정에 상정된 미처리 안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마. 의안의 제출·발의 및 동의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함.(안 제19조부터 제32조까지)

바. 의원의 발언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함.(안 제33조부터 제42조까지)

사. 표결 및 회의록 작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함.(안 제43조부터 제53조까지)

아. 위원회의 의사일정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함.(안 제54조부터 제67조까지)

자. 예산안 및 결산 등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8조부터 제72조까지)

차.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답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3조부터 제76조까지)

카. 의원의 사직 및 자격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7조부터 제80조까지)

타. 의회 안에서의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과 의원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1조부터 제94조까지)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 등에 따라 부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록)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에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국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제3조(의석배정) ① 의원의 의석은 부천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

② 지방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의회사무국장이 지역선거구 순서에 따라 의원의 성명 가나다 순으로 정하고, 그 다음 비례대표 의원의 성명 가나다 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제4조(개회식) ①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거행한다, 다만, 총선거 후에 최초의 임시회를 개회하였을 때에는 의장 및 부의장 선거 후에 개회식을 거행한다.

② 임시회 때에는 개회식을 생략할 수 있다.

제5조(선서) 의원은 임기 초에 의회에서 다음과 같이 선서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6조(의회의 개회 및 폐회) ① 의회는 개회식에 따라 개회한다. 다만, 제4조 단서에 따라 개회식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제1차 본회의 개의를 개회로 본다.

② 의회는 폐회식을 별도로 거행하지 아니하며, 그 회기의 마지막 본회의가 산회됨으로써 폐회된다.

제7조(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請暇書)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원의 청가 기간이 5일 이내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회에서 이를 허가한다.

③ 의원은 청가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청가 기간 내에 의회에 출석한 때에는 그 날 이후의 청가는 그 효력이 상실된다.

④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의장 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해당 의원에게 출석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출석요구는 문서로 하되, 긴급할 때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제2장 의장 및 부의장

제8조(의장 및 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 및 부의장은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 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제2항의 결선 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부의장을 선거한다.

제9조(의장 및 부의장의 임기) ① 의장 및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지방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시작하여 의원 임기가 개시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지방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된 때에는 그 의장 또는 부의장은 다음 회기에서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한 날의 전일까지 재임한다.

③ 보궐선거로 당선된 의장이나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임시 의장의 선거) 임시 의장의 선거는 제8조를 준용한다.

제11조(의장 및 부의장의 사임) ① 의장 및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②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3장 회의

제1절 회의의 개폐

제12조(회기) ① 의회의 회기는 의결로 정하되, 회기를 연장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의회의 회기는 집회 후에 즉시 정하여야 한다.

③ 의회의 회기는 집회한 날부터 기산한다.

④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제13조(개의) 본회의는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개의 시각을 정하며, 이를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제14조(회의에 관한 선포) ① 개의·정회·산회 및 유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② 의장은 제13조의 개의 시각으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③ 의장이 개의를 선포하기 전이나 정회·산회 및 유회를 선포한 후에는 의사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제15조(휴회) ① 의회는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

② 휴회 중이라도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재개한다.

제2절 의사일정

제16조(의사일정의 작성) ① 의장은 개의일시, 부의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미리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재개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의사일정을 작성할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③ 의장은 특히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

제17조(의사일정의 변경) 의장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동의에는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18조(미처리 안건의 처리) 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

제3절 의안 및 동의

제19조(의안의 제출, 발의)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시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에서 의안을 제출할 경우에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한다.

제20조(의안의 상임위원회 회부) ①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에 본회의에 부의한다.

② 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

③ 의장은 의안의 발의·제출 및 심사 회부에 관한 사항을 그 의안의 발의·제출 및 심사 회부한 날부터 가장 먼저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한다.

제21조(의안의 특별위원회 회부) ①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의 의결을 받아 이를 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의장은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을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22조(의안의 심사기간) ①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중간보고를 들은 후에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제23조(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의 처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특별히 심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24조(의안의 상정시기) ① 위원회는 발의 또는 제출된 의안이 회기 개시 7일 전까지 해당 위원회에 회부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 다만, 다른 위원회가 예비심사한 의안과 재 회부되는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동의의 의제성립) 동의는 이 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26조(수정동의) ①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은 찬성 없이 의제가 된다.

③ 위원회는 소관 사항 외의 안건에 대하여는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

④ 의안에 대한 대안은 위원회에서 그 원안을 심사하는 동안에 제출

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그 위원회에 회부한다.

제27조(의안 및 동의의 철회) ① 의원이 발의한 의안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발의자 전원,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동의한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에 의제가 된 후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시장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시장제출의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8조(번안) 의안에 대한 번안동의를 할 경우에는 본회의에서는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그 의안을 발의할 때의 찬성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위원회에서는 위원 간의 동의로 발의한다. 다만, 본회의에서는 안건이 시장에게 이송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으며, 위원회에서는 본회의의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제29조(안건의 심의) ① 본회의에서 안건을 심의할 경우에는 제안자의 취지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을 거쳐 표결하되, 의결로 질의와 토론을 하거나 그중에서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제안자가 시장일 경우에는 취지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대리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2건 이상의 안건을 일괄해서 의제로 할 수 있다.

제30조(재 회부) 본회의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받은 후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의결로 다시 그 안건을 같은 위원회에 재 회부하거나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31조(의안의 정리) 본회의는 의안의 의결이 있은 후에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내용에 대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를 의장 또는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32조(의안의 이송) 의회에서 의결된 의안은 의장이 이를 시장에게 이송한다.

제4절 발언

제33조(발언의 허가) ① 의원이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발언허가 통지를 받지 못한 의원은 통지받은 의원의 발언이 끝난 다음에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③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은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의장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허가하고, 그 외의 것에 대하여는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

제34조(발언의 장소) ① 발언은 등단하여 하되, 극히 간단한 사항이나 토론 또는 의장이 허가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필요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하는 의원을 등단하도록 할 수 있다.

제35조(발언의 계속) 발언은 발언 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으로 인하여 정지되지 아니하며, 산회 또는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다시 그 의사가 개시되면 의장은 먼저 그 발언을 계속하게 하여야 한다.

제36조(의제 외 발언의 금지) ① 모든 발언은 의제 외의 내용이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의장은 의원의 발언이 제1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원에 대하여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시킬 수 있다.

제37조(발언횟수의 제한)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거나 위원장, 발의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와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조(발언시간의 제한) ①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의, 보충발언, 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의 경우에는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의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제39조(보충보고) 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소수 의견자가 위원회의 보고를 보충하기 위하여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다른 발언에 우선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40조(토론의 통지) ① 의사일정에 올린 의안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순서를 고려하여 가급적 반대자와 찬성자를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한다.

제41조(의장의 토론참가) ① 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의장이 의장석에서 물러날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을 대리한다.

제42조(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① 질의 또는 토론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종결을 선포한다.

② 의원 2명 이상의 발언이 있은 후에는 의회의 의결로 의장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질의나 토론에 참가한 의원은 그 종결을 동의할 수 없다.

③ 제2항의 동의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5절 표결

제43조(표결의 선포) ① 의장은 표결 시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선포하여야 한다.

②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

제44조(표결의 참가) 표결 시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투표로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제45조(의사변경의 금지) 의원은 표결 시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

제46조(표결방법) ①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의원에게 기립 또는 거수하게 하여 가부를 결정한다.

② 의장이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기명 또는 무기명투표로 한다.

③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④ 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기명투표로 한다.

제47조(투표절차) ① 투표 시 의원은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넣은 다음에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투입한다.

② 투표 시 의장은 의원 중에서 약간 명의 감표위원을 지명하고, 그 위원의 참여하에 투·개표 상황을 점검하고 투표수를 계산하게 한다.

③ 투표수가 명패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감표위원은 다른 위원이 모두 투표를 완료한 후에 투표한다.

제48조(수정안의 표결순서) ① 의장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수개의 수정안이 제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표결의 순서를 정한다.

1.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할 것

2. 의원의 수정안은 위원회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할 것

3. 의원의 수정안이 수개가 있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할 것

②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에는 원안에 대하여 표결한다.

제49조(표결결과의 선포) 의장은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그 결과를 선포한다.

제6절 회의록

제50조(회의록의 작성) ① 의회는 다음의 내용으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개회 및 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회의중지 및 산회의 일시
3. 의사일정에 관한 사항
4. 출석의원의 성명 및 인원수
5. 출석공무원의 직·성명
6. 의원의 이동과 의석의 배정 및 변동에 관한 사항
7. 제반 보고 사항
8. 의안의 발의, 제출, 회부, 환부, 이송 및 철회에 관한 사항
9. 부의안건과 그 내용에 관한 사항
10. 의사에 관한 사항
11. 표결 및 기명투표의 투표자의 성명
12. 서면질문과 답변에 관한 사항
13. 의원의 보충 발언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본회의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발언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한다.

③ 속기방법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의 내용은 삭제할 수 없으며, 발언을 통하여 자구정정 또는 취소의 발언을 한 경우에는 그 발언을

회의록에 기재한다.

제51조(회의록에 서명과 보존) ① 회의록에는 의장, 의장을 대리한 부의장, 임시의장과 의회에서 선출한 의원 2명 및 의회사무국장이 서명·날인한다. 다만, 선출된 의원은 한 회기동안만 서명·날인한다.

② 회의록은 의회에서 영구로 보존하여야 한다.

제52조(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① 발언한 의원과 공무원 그 밖의 발언자는 회의록이 배부된 날의 다음날 오후 5시까지 그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언의 취지는 변경할 수 없다.

② 의원이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토론을 거치지 아니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제53조(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①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에게 공개한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관하여는 의장이 발언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의원이 제1항에 따라 게재하지 아니한 회의록 부분에 관하여 열람, 복사 등을 신청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장은 이를 거절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의원은 다른 사람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 복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⑤ 공개할 수 있는 회의록은 일반에게 유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

제4장 위원회

제54조(의사일정과 개회일시)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55조(본회의 중의 위원회 개회)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의 중에 개회할 수 없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6조(위원회에서의 동의) 위원회에서의 동의는 특별히 다수의 찬성자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57조(위원회의 제안) ①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조례안 및 그 밖의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의안은 위원장이 제출자가 된다.

제58조(위원회의 심사) ① 위원회에서 의안을 심사할 때에는 먼저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심의의안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제안자가 시장일 경우이거나 제2항일 경우에는 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59조(위원의 발언) ①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위원회에서 동일 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 등에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다. 다만, 따로 발언의 방법을 의결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은 위원회에서의 질의를 일문 일답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제60조(위원이 아닌 의원의 발언 청취) 위원회는 안건에 관하여 위원이

아닌 의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

제61조(위원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62조(연석회의) ①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이 경우 표결은 할 수 없다.

② 연석회의를 열고자 하는 위원회는 위원장이 부의할 안건명과 이유를 서면으로 제시하여 다른 위원회와 그 위원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③ 연석회의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제63조(공청회) ①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이나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열어 이해관계자 또는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등(이하 “진술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 때에는 안건, 일시, 장소, 진술인, 경비 그 밖의 참고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시간은 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의 발언은 그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는 그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제64조(심사보고서의 제출)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경과와 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심사보고서에는 소수의견의 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심사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도 있다.

제65조(위원장의 보고) ① 위원장은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안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위원장은 다른 위원에게 제1항의 보고 또는 보충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제1항의 보고를 하는 때에는 자기의 의견을 첨가할 수 없다.

제66조(위원회 회의록) ① 위원회는 다음의 내용으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개의, 회의중지 및 산회 일시
2. 의사일정에 관한 사항
3. 출석위원의 성명
4. 위원이 아닌 출석의원의 성명
5. 출석공무원 및 진술인의 성명
6. 심사의안명
7. 의사에 관한 사항
8. 표결수에 관한 사항
9. 위원장의 보고에 관한 사항
10. 위원회에서 종결되거나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안건명과 그 내용
11.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에서의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요약하여 기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약한 기록이 발언자의 발언취지를 벗어나거나 과다하게 요약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회 회의록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간사가 서명·날인한다.

제67조(비공개 회의록 등의 열람과 대출의 금지) 위원장은 의원으로부터

비공개 회의록 그 밖에 비밀 참고자료의 열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심사, 감사 또는 조사에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 밖으로는 대출하지 못한다.

제5장 예산안 및 결산 등의 심사

제68조(예산안 등의 심의) ① 의장은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되는 때에는 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를 기금운용계획안과 함께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한다. 이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③ 의장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결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69조(예산안의 수정동의) 예결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70조(예산안의 의결) ① 예산안의 심사보고가 있은 때에는 각 부문별로 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② 예산 각 부문의 의사가 끝나면 총액에 대하여 의결한다.

제71조(예산안의 재심요구) 의장은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의결로 그 사항에 한하여 기간을 정하여 예결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제72조(결산 등의 심사) ① 의장은 의회에 결산이 제출된 때에는 이를

기금결산보고서와 함께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결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심사하게 한 후에 그 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한다.

③ 의장이 결산과 기금결산보고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제68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6장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답변

제73조(시장 등의 출석요구) ① 본회의는 그 의결로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은 출석하여 답변하여야 하며, 시장은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의 대리출석이 필요한 때에는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사전에 제출한 후에 관계 공무원에게 대리 출석하여 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74조(시정질문·답변) ① 본회의는 회기 중에 시정전반 또는 시정의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질문(이하 “시정질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야 하며, 소관 업무의 상세한 답변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대리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의원의 시정질문과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끝난 후 필요한 경우에는 질문한 의원에게 일문일답의 보충질문을 허가할 수 있다.

④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의장은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질문요지서가 시장에게 도달되도록 이송하여야 하며, 시장은 서면으로 답변서를 작성하여 답변시간 24시간 전까지 답변서가 의원에게 도달되도록 이송하여야 한다.

제75조(시장에 대한 서면질문) ① 시장에게 서면으로 질문할 때에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지체 없이 이를 시장에게 이송한다.

② 시장은 질문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하여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은 서면으로 다시 질문할 수 있다.

제76조(시장의 발언)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장 의원의 사직 및 자격심사

제77조(의원의 사직) ① 의원이 사직하려면 본인이 서명·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사직의 허가여부에 대하여는 토론하지 아니하고 표결에 부친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③ 의원은 본인이 제출한 사직서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는 철회할 수 있다.

제78조(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① 법 제79조에 따른 의원의 자격심사를 청구받은 의장은 그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며,

그 부본은 피심의원(被審議員)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피심의원이 천재지변 또는 질병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함을 증명한 때에는 다시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79조(답변서의 위원회 심사 등) ① 의장은 답변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청구서와 답변서를 중심으로 심사한다. 다만, 피심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청구서만으로 의원의 자격을 심사할 수 있다.

③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자격상실의 의결이 있은 때에는 그 결과를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에게 이송한다.

제80조(당사자의 심문과 발언) ①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을 경유하여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피심의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에게 변명하게 할 수 있다.

제8장 질서

제81조(경호) ① 의장은 의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할 경찰관서에

경찰관의 파견을 미리 요구할 수 있으며, 의회의 경호가 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이 단독으로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경찰관의 파견을 즉시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찰관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회의장 밖에서 경호한다.

제82조(회의의 질서유지)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 안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언동
2.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간행물 그 밖의 문서를 낭독하는 행위
3.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료, 문서 등의 인쇄물을 배포하거나 녹음, 녹화 및 촬영 행위
4. 음식물의 섭취 또는 흡연행위
5. 회의와 관계 없이 물품을 휴대반입하는 행위
6. 그 밖에 폭력의 행사 등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

제83조(회의장 출입의 제한)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 공무원 그 밖에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와 의장이 허가한 자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제84조(방청의 허가) 의장은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한다.

제85조(방청석의 구분 및 방청권의 종류) ① 방청석은 일반석과 기자석을 구분한다.

② 방청권의 종류는 일반방청권, 단체방청권 및 장기방청권으로 구분한다.

제86조(방청권의 교부 및 기재) ① 방청권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의회사무국장이 그 수를 정하여 이를 교부한다.

② 단체방청권은 교육기관 그 밖의 단체의 신청에 따라 단체로 방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그 대표 또는 책임자에게 교부한다.

③ 장기방청권은 보도기관 종사자나 업무상 방청이 특별히 필요한

관서의 직원에게 교부하며, 장기방청권을 교부받은 자는 그 회기동안 방청할 수 있다.

④ 방청인은 방청권에 주소, 성명, 직업 및 연령 등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87조(방청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자
2. 술에 취한 자
3. 정신이상자
4. 그 밖에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자

② 의장은 필요한 때에는 경찰관 또는 관계 직원에게 방청인의 휴대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방청석이 여유가 없을 때에는 방청권을 소지한 자라 하더라도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제88조(방청인의 준수사항)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2. 음식물의 섭취 또는 흡연행위
3. 의장의 허가 없는 녹음, 녹화 및 촬영행위
4. 회의장 안의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5. 그 밖에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제89조(녹음 및 녹화 등) ①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의회에 등록된 기자에 한하여 회의장

안(본회의장은 방청석에 한한다)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이하 “녹음등”이라 한다)을 허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녹음등을 하려는 자는 매 회기 초에 허가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구두로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사무직원의 기록보존 등의 업무와 관련된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및 촬영은 절차상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녹음 등을 하는 자는 회의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장 징계

제90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 의장은 법 제86조에 해당하는 징계대상의원(이하 “징계대상자”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위원장은 소속위원 중에서 징계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1항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③ 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3조에 따라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의원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④ 의장은 제3항에 따른 징계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⑤ 의장은 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징계대상 행위가

지극히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본회의에 바로 부의할 수 있다.

제91조(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① 제90조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징계의 회부는 의장이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 위원장이 보고를 받은 날 또는 같은 조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은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5항의 본회의 부의시한 또한 같다.

② 제90조제2항에 따른 위원장의 징계대상자 보고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징계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기간 중에 징계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회기의 회의 집회일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92조(의사의 비공개)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93조(심문 및 변명) ①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의장을 경유하여 징계대상자와 관계 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의원은 본인의 징계 사안과 관련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으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을 하게 할 수 있다.

제94조(징계의 의결과 선포) ①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본회의에 부의하여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공개회의에서 이를 선포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